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4일, 박충권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7차 전체회의(2024. 8.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원회의(2025. 11. 28.)

상정, 축조심사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원회의(2026. 4. 9.)

상정, 축조심사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소위원회의(2026. 4. 14.)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2026. 4. 14.)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박충권의원)

새로운 지식·가치 창출의 원천으로서 연구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융합·공동연구 촉진을 위한 연구데이터 공유 체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일찍이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과학기술 연구의 디지털화를 통해 연구데이터를 축적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공적자금이 투입된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관리계획의 도입,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 하지만, 법·제도적 인프라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활성화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기술유출 사건·사고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연구데이터의 관리·활용체계 확립이 시급함. 이에 국가연구개발 과정에서 생성된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근거법을 제정함으로써, 연구개발로 산출되는 연구성과물의 디지털 자산화를 촉진하고, 공유·활용을 통해 새로운 과학기술적 성과와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대훈)

제정안은 연구데이터 관리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하여 국가자

산이자 과학기술의 원천인 양질의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공개·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과학자들의 후속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제정안의 심의에 있어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연구데이터의 공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을 통해 규정할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에 의해 수행되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연구데이터 통합 관리를 위해서는 법률이라는 규율 형식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임.

둘째, 동 제정안은 연구데이터에 대한 수집 및 공유 원칙을 통해 국가 전체적인 데이터 산업 정책과 상충되지 않으면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특수성을 일부 고려하는 방식으로 규정된 것으로 보임.

현재 우리나라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 등 데이터 전반에 관한 사항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상의 제도 중 제정안과 중복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정책 방향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가령, 안 제6조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

1)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획”이나 제7조의 “시행계획”을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상의 계획과 연계하도록 하거나, 제20조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상의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특별 분과로 연구데이터에 관한 분쟁조정을 담당하도록 규정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최형두)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